

의안번호	2219171
의 퇴 인	이철규 의원
회 답 일	2026. 7. 22.
추 계 번호	26A2796

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· 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①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, ②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(안 제6조), ③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의 설치·운영(안 제8조), ④규제배심원단의 설치·운영(안 제22조) 등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4억 9,900만원(연평균 3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	50	—	—	50	—	100	20
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(안 제6조)	250	250	250	250	250	1,250	250
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의 설치·운영(안 제8조)	8	15	15	15	15	68	14
규제배심원단의 설치·운영(안 제22조)	9	18	18	18	18	81	16
합 계	317	283	283	333	283	1,499	300

주: 1.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2.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 ○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－ 1.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원제도의 수립 및 정비, 규제 및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－ 2.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보급, 시설투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－ 3.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－ 4.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－ 5. 인공지능 관련 법적·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항 － 6.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 전문기업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－ 7. 중소기업 현장 밀착형 인공지능 솔루션 보급 확산에 관한 사항 － 8.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－ 9. 업종·분야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실태 및 수요 분석 － 10. 특화 인공지능 모델·서비스 개발 및 창업 촉진 전략 － 11.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·확산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3항) ○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6항)	의무규정
2	안 제6조(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고, 미래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변화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통계법」 제37조에서 정하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 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제9조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 ○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 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
3	안 제7조(재원의 확보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및 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,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8조(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)	○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(제1항) －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－ 2.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－ 3. 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－ 4.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권고에 관한 사항 － 5. 제21조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에 관한 사항 － 6.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○ 위원회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내 전문위원회로 설치함(제2항) ○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5	안 제9조(전담기관 지정 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확산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－ 2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른 중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소벤처기업진흥공단 - 3. 「기술보증기금법」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- 4.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○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(제2항) - 1.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- 2.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 사업 지원 - 3. 대·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지원 - 4. 지역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클러스터 구축 지원 - 5.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및 판로개척·해외진출 지원 - 6. 제20조에 따른 규제준수 지원 사업 - 7.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과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 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 - 1. 중앙행정기관 - 2. 지방자치단체 -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- 4.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	
6	안 제10조(인공지능 활용촉진사업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(이하 “인공지능 활용촉진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- 1. 인공지능 수준 진단에 따른 컨설팅 지원 - 2.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필요한 자금 지원 - 3. 인공지능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 - 4. 산·학·연 공동 실증기술혁신 지원 - 5. 인공지능기술,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판로 지원 - 6. 인공지능 관련 인력 양성 및 공급 지원 - 7. 인공지능 기술 수요기업과 공공기업 간 중개 - 8.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 ○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 활용촉진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
7	안 제11조(금융·세제·투자지원)	○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- 1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통한 정책자금 융자 - 2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,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보증제도 수립·운영 ○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도입·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제지원을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음(제2항) - 1.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- 2. 인공지능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- 3.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 및 전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- 4. 인공지능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분야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, 전용 투자조합 조성, 민간투자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 ○ 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(제4항) -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- 2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- 3. 그 밖의 부대수입 ○ 지원기준·지원범위·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	재량규정
8	안 제12조(인력 양성 및 연계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직자 및 신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교육·훈련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등과 연계하여 업종·분야별 특화된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인공지능 융합인력 양성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제2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성된 전문인력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연계·파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파견 인력의 인건비·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확산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(제4항) ○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 및 지원범위 등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	
9	안 제13조(인공지능 전문기업 및 선도중소기업 발굴·육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, 데이터 구축,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공급기업을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 발굴·육성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 ○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 전문기업 및 선도중소기업 확인 및 지원 기준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6항)	재량규정
10	안 제14조(인공지능기술정보 공개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정보를 공개·공유하는 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방형 인공지능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인프라,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11	안 제15조(협회)	○ 인공지능기술 또는 융합서비스 등의 이용 촉진 및 확산을 통한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공지능 중소기업 관련 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○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등의 이용 촉진 및 확산 － 2.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보호 관련 자율규제 건의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- 3. 인공지능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의 - 4. 전문인력의 양성 - 5. 지식재산권 보호 - 6. 규제 개선 일괄 지원을 위한 창구 운영 - 7. 인공지능 선도기업 육성 관련 건의 - 8. 인공지능 컨설팅회사 제도운영 및 육성방안 건의 - 9.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
12	안 제16조(기업 데이터 지원사업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데이터를 연합학습이나 합성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생산·수집·가공·분석·유통을 촉진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비식별화, 익명화, 암호화 등 기술적·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, 연구기관, 공공기관, 중소기업 등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13	안 제17조(숙련기술 등의 데이터화)	○ 정부는 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숙련기술, 현장 노하우 및 작업지식 등(이하 “숙련기술 등”이라 한다)의 데이터화를 통한 보존과 전승,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- 1. 숙련기술 등의 수집, 데이터화 및 구조화 지원 - 2. 데이터화된 숙련기술 등의 인공지능 기반 분석, 학습 및 활용 시스템 구축 지원 - 3.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숙련기술 등의 효율적인 전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- 4. 인공지능 기반의 작업 지능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- 5. 그 밖에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등의 데이터화 및 인공지능 기반의 보존과 전승, 고도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	재량규정
14	안 제19조(기업데이터 관련 제도 지원)	○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데이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- 1.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지침의 마련 - 2. 인공지능 전환 등에 관한 법률·기술 지원 및 교육 - 3. 산업별·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및 전환 가이드라인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○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제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
15	안 제20조(규제준수를 위한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을 개발·활용함에 있어 기본법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저작권법」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관련 조례 등에 따른 규제준수를 위한 기술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○ 제1항의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(제2항) 1. 안전성 입증을 위한 전문기관의 검·인증 지원 2. 규제준수를 위한 컨설팅 3.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·확산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사항	재량규정
16	안 제22조(규제배심원단의 설치 및 운용 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또는 활용·확산에 관련된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로서, 그 규제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모델개발 또는 국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 및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배심원단(이하 “규제배심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음(제1항) ○ 규제배심원단의 구성,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17	안 제27조(지역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·확산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·확산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또는 지역 상점가를 지정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(제2항) 1.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 지원 2. 소상공인 인공지능 도입에 필요한 비용 및 인프라 지원 3.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·확산을 위한 교육,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4.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5. 그 밖에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·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18	안 제28조(지역 전략산업 융합 및 협력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에 따른 지역전략산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업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, 지역 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- 1. 지역전략산업에 적합한 인공지능 융합 모델 발굴 및 개발 - 2. 인공지능 융합 기술의 사업화 지원 - 3. 지역 내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·생산 또는 마케팅 지원 - 4.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 전문기업 또는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○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인공지능 전문기업·중소기업·소상공인 간 공동기술개발 및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·실증 사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음(제2항)	
19	안 제29조(지역 인공지능 중소기업 인프라 구축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·확산을 위하여 컴퓨팅, 인프라 공동 활용, 테스트 환경 제공 등을 지원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.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	재량규정
20	안 제30조(지역 인공지능 창업대학원 지원 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중 비수도권 소재 인공지능 분야 창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원이 연합하여 물적·인적 자원 공유 등 교육과정을 효율화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21	안 제31조(중소기업 인공지능 혁신허브 지정 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수준을 향상시키고 활용사례의 신속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혁신허브(이하 “혁신허브”라 한다)를 지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○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 건축물에 혁신허브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할 수 있음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혁신허브 지정을 승인한 경우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지정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지원 조항을 적용함(제2항) - 1.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내 건축물 - 2.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내 건축물 - 3. 「과학기술기초법」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건축물 - 4. 인공지능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투자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내 건축물 ○ 혁신허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(제3항) - 1. 지역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활용·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- 2.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- 3. 자금의 융자 주선과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- 4. 인공지능 전문가 육성, 지역 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 및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- 5.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, 전문 컨설팅회사와 연계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- 6.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·확산 성공사례 발굴·포상 및 홍보 - 7.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 ○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허브의 지정기준,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6항)	
22	안 제32조(혁신허브 인공지능 활용·확산 지원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허브 내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, 클라우드, 각종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투자 펀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혁신허브에 입주한 기업의 기술개발, 실증,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- 1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- 2. 대학·연구기관·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, 실증시설 등 연구시설·장비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○ 정부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혁신허브에서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체류기간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. 이 경우 사증 발급과 체류기간 등의 기준과 절차 및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 ○ 정부는 「병역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에 있어 혁신허브 내 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(제4항) ○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허브 입주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·법인세·취득세·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(제5항)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허브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(제6항)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	○	—
2	안 제6조(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)	○	—
3	안 제7조(재원의 확보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			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공지능 기술 및 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,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경우 예산 및 기금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구체적 지출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
4	안 제8조(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)	○	—
5	안 제9조(전담기관 지정 등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-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및 확산을 지원할 목적으로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,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- 정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도입·전환 촉진을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, 세제지원의 대상·내용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고영향 인공지능 개발·활용 시 규제준수를 위하여 기술적·행정적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·방법 및 지원 수준 등의 정보가 부족하므로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6	안 제10조(인공지능 활용 촉진사업)	X	
7	안 제11조(금융·세제·투자지원)	X	
8	안 제12조(인력 양성 및 연계)	X	
9	안 제13조(인공지능 전문기업 및 선도중소기업 발굴·육성)	X	
10	안 제14조(인공지능 기술정보 공개 지원)	X	
11	안 제15조(협회)	X	
12	안 제16조(기업 데이터 지원사업)	X	
13	안 제17조(숙련기술 등의 데이터화)	X	
14	안 제19조(기업데이터 관련 제도 지원)	X	
15	안 제20조(규제준수를 위한 지원)	X	
16	안 제22조(규제배심원단의 설치 및 운용 등)	○	—
17	안 제27조(지역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·확산 지원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·확산, 지역 전략산업 융합 및 협력, 지역 전략산업 융합 및 협력, 지역 인공지능 중소기업 인프라 구축, 지역 인공지능 창업대학원, 중소기업 인공지능 혁신허브 등을 지원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시점에서 구체적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
18	안 제28조(지역 전략산업 융합 및 협력)	X	
19	안 제29조(지역 인공지능 중소기업 인프라 구축지원)	X	
20	안 제30조(지역 인공지능 창업대학원 지원 등)	X	
21	안 제31조(중소기업 인	X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	공지능 혁신허브 지정 등)		계가 불가능함
22	안 제32조(혁신허브 인공지능 활용·확산 지원)	X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수의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
- 제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및 확산 관련 주요 재정사업: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-내역사업명 (회계, 코드)	사업내용	2026년 제1회 추경예산
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-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(일반회계, 2111-303)	중소 제조현장의 신속한 AI 전환 추진을 위해 1~2년 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스마트제조 분야 AI 제품·서비스 상용화 및 확산 지원	64,500
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-제조혁신 구축 지원 (일반회계, 2111-303)	(자율형공장) AI·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, 분석, 예측 등 작업자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“자율형공장” 구축지원, 제조현장에 특화된 AI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, 예측유지보수, 불량검출 등 특정목적형 AI공장 구축	95,000
	(대중소상생형) 정부,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AI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	65,000
데이터인프라구축(정보화) (일반회계, 2111-305)	중소 제조기업의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제조분야 디지털전환 종합플랫폼(제조 DTaaS) 구현	5,922
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(R&D) (일반회계, 2134-377)	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제조 3대분야(①첨단제조, ②유연생산, ③현장적용)의 공급기술 개발 지원	23,326
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(일반회계, 2111-304)	AI 등 첨단 ICT 활용, ① BM 창출, 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	10,888
중소벤처 행정정보화(정보화)-대민정보시스템 통합운영체계 구축	중소벤처·소상공인이 중기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민정보통합시스템 구축	8,193

세부사업명-내역사업명 (회계, 코드)	사업내용	2026년 제1회 추경예산
(일반회계, 7232-503)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(R&D)	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을 위한 ①연구개발 설계(추진체계 및 역할 등 수립), ②데이터 구축(전처리), ③AI 에이전트 구조설계 기획 지원	3,600
(일반회계, 2134-488)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	지역에 특화한 데이터·AI 활용 플랫폼 구축, AI 학습 데이터셋 구축, 지역 제조기업의 데이터·AI 활용 지원 등	6,000
(일반회계, 2111-312) 창업사업화지원-창업패키지	빅데이터·AI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	20,500
(일반회계, 5132-302) 창업사업화지원-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	(AI 스타트업 특화지원트랙)고성장(sLLM, 제조, 바이오, 콘텐츠) 분야 스타트업 사업화, 수요기업(대·중견)과 유망 AX 스타트업 간 협업, 지역 주력 산업과 AI 기술 협업 지원 등	20,000
(일반회계, 5132-302) 창업성장기술개발(R&D)-TIPS	성공벤처인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자 및 정부R&D를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	60,900
(일반회계, 2134-309) 투·융자 연계 기술 개발(R&D)-스케일업팁스	시장에서 성장가능성, 유망성 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를 받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정부가 R&D 자금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스케일업 촉진	36,680
(일반회계, 2134-486) 표준공정 기반 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(R&D)	중소제조기업의 공정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제조공정 참조 모델 기반으로 공정최적화 R&D 지원을 통한 혁신적인 KPI 제고 및 AX 기반 마련	3,000
(일반회계, 2134-487) 재도약촉진-지역 주도형 AI 대전환	AI 솔루션, AI 인프라, AI 인력양성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AI 활용·확산 프로그램 지원	49,000
(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, 5161-302) 창업성공패키지-창업성공패키지	(AI딥테크 특화과정) 성장 잠재력이 높은 AI, 로봇, 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 청년창업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등 지원	19,500
(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, 5152-302) 창업성공패키지-스타트업AI 기술 인력 양성	(AI 청년인재 양성)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산업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 교육과정 운영	2,900
(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, 1261-301) 신성장기반자금(융자)	(AX스프린트우대트랙)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(AI 전환 스프린트 우대 트랙을 신설하여 AI 분야 기업 지원 확대)	70,000
(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, 5152-302) 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	(AX스프린트우대트랙)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(AI	70,000

세부사업명-내역사업명 (회계, 코드)	사업내용	2026년 제1회 추경예산
기금, 5152-301)	전환 스프린트 우대 트랙을 신설하여 AI 분야 기업 지원 확대)	
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(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, 5264-301)	(딥테크 AI 스타트업·스케일업 펀드)AI·딥테크 분야 유망기업의 창업 단계부터 스케일업까지 성장 단계별 대규모 집중 투자 지원	200,000
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-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(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, 4131-316)	AI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만의 새로운 가치와 차별화된 제품·서비스 창출	14,360
소상공인재기지원 -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(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, 4131-319)	AI 기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보 및 신청 보조, 상권정보 및 창업 업종·지역 등 맞춤형 추천 등	5,000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-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, 본 추계에서는 ①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, ②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(안 제6조), ③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의 설치·운영(안 제8조), ④ 규제배심원단의 설치·운영(안 제22조)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
- 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 - 다만, 2027년의 경우 법안의 시행 시점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 및 규제배심원단은 하반기부터 운용되는 것으로 가정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

-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따른 비용은 추계 첫해부터 3년마다 연구용역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2027년에 5,000만원, 2030년에 5,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
 - 유사 연구사례로는 “중소기업 AI 활용확산 및 혁신성장을 위한 법령체계 연구”(중소벤처기업부, 2025년, 5,000만원), “경기도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실태조사 용역”(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, 2024년, 5,200만원) 등이 있음
 - 동 계획은 3년 주기로 수립·시행되므로 법 시행 첫해인 2027년과 2030년에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	50	-	-	50	-	100	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(안 제6조)

-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하고, 연간 2억 5천만원씩 추계기간 동안 총 12억 5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 -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의 실태조사 사례를 고려하여 동 조사에 2억 5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
 -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실태조사 실시 사례로는 “기술혁신형기업 정밀실태조사”(2025년, 1억 5천만원), “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”(2025년, 3억원), “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”(2025년, 3억 2,200만원) 등이 있음

- 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, 유사사례를 고려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3] 중소기업 인공지능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(안 제6조)	250	250	250	250	250	1,250	2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의 설치·운영(안 제8조)

□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비용은 민간위원의 회의참석 수당으로 하며,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,800만원(연평균 1,400만원)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- 중소벤처기업부 문의 결과를 바탕으로,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추가 회의 횟수는 연 6회, 민간위원 수는 10명, 수당 단가는 25만원¹⁾으로 가정함

※ [참고자료] 중소기업정책심의회

- 위원회의 위원 수는 결원 없이 유지되고, 회의 개최·참석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다만, 2027년은 법안의 시행 시점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에만 3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- 회의참석수당은 민간위원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,800만원(연평균 1,400만원)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함
 - 2027년: 민간위원 수(10명) × 회의 횟수(3회) × 수당 단가(25만원) = 연

1)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(기획예산처)

·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,000원 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,000원 내로 편성
·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,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지급

750만원

- 2028~2031년: 민간위원 수(10명) × 회의 횟수(6회) × 수당 단가(25만원) = 연 1,500만원

[표 4]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 위원회의 설치·운영(안 제8조)	8	15	15	15	15	68	14

주: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라. 규제배심원단의 설치·운영(안 제22조)

□ 규제배심원단 운용 비용은 배심원의 참석수당으로 하며, 2027년에는 900만원,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연간 1,8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함

- 안 제22조제2항에서 규제배심원단의 구성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, 규제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용은 유사사례인 ‘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’의 ‘농식품 R&D 국민 배심원단’을 참고하여 민간배심원 30인으로 구성하고 활동수당은 회당 150,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
 - 농식품 R&D 국민 배심원단은 민간(전문가, 일반국민)인 30명으로 구성되고, 회의 참석에 따라 1회 150,000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함
- 규제배심원단의 활동 횟수 등을 현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연간 대면 회의 4회로 가정함
 - 다만, 2027년은 법안의 시행 시점 등을 고려하여, 하반기에만 규제배심원단이 운용되는 것으로 가정함
- 배심원 수는 결원 없이 유지되고, 배심원 회의 개최·참석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- 규제배심원단 운용에 따른 비용은 배심원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되며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8,100만원(연평균 1,600만원)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함
 - 2027년: 배심원 수(30명) × 회의 횟수(2회) × 수당 단가(15만원) = 연 900만원

- 2028~2031년: 배심원 수(30명) × 회의 횟수(4회) × 수당 단가(15만원) = 연 1,800만원

- 배심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15만원으로 할 경우 규제배심원단의 설치 및 운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,100만원(연평균 1,600만원)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5] 규제배심원단의 설치·운용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규제배심원단의 설치·운용(안 제22조)	9	18	18	18	18	81	16

주: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손희정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손희정	02-6788-3750	hjson87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중소기업정책심의회

(자료: 중소벤처기업부)

- (추진근거) 중소기업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심의·조정을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·운영(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)
- (심의회 구성) 위원장(중소벤처기업부 장관) 포함 30명 이내(위원장 1, 당연직 15, 위촉직 14)
 - (당연직) 중소기업 정책 유관 부처 차관급(재정부, 산업부, 고용부 등 15개 부처)
 - (위촉직) 중소기업 관련 협·단체장, 업계·학계·연구기관 대표 등
 - 원활한 심의회 운영을 위해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운영

